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법무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3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(IFRS17)이 전면 시행되어 보험회사의 보험부채가 공정가치 평가로 변경되나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에서 미실현이익만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,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거래를 하고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 상계할 수 있도록 예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19조 제2항 제3호 신설)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보험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거래를 하고, 그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와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거래에 따른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가. 보험계약 관련 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또는 동법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
- 나.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「상법」 제661조에 따른 재보험 거래
- 다. 「보험업법」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험계약 중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미실현이익의 범위) ① (생략)	제19조(미실현이익의 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각각의 미실현이익과 미 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3. 「보험업법」 제2조제1호에 <u>따른 보험상품의 거래를 하고,</u> <u>그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</u> <u>위하여 해당 거래와 연계된</u> <u>거래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</u> <u>목의 거래에 따른 미실현이익</u> <u>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</u> <u>가. 보험계약 관련 부채의 금</u> <u>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</u> <u>위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</u> <u>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</u> <u>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또</u> <u>는 동법 제5조에 따른 파</u> <u>생상품의 거래</u> <u>나.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</u> <u>전하기 위한 「상법」 제6</u> <u>11조에 따른 재보험 거래</u>

	<u>다. 「보험업법」 제108조제1</u> <u>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</u> <u>보험계약 중 보험금이 자</u> <u>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</u> <u>동하는 보험계약에서 발생</u> <u>하는 거래</u>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무부 상사법무과	
연 락 처	(02) 2110 - 3635